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304회 제1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4. 6.

임 미 연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임미연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 긴급구조의 활성화를 위한 표창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생명보호 및 생활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5조에서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제4조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14조에서는 긴급구조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 하여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등을 위한 표창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그 밖에 기관명 변경에 따른 수정 및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4년 5월 30일부터 2024년 6월 10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 긴급구조의 활성화를 위한 표창 규정 등을 신설하여, 구민의 생명보호 및 생활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4054
----------	----------

발의일자: 2024. 5. 30.
발의자: 임미연, 박종길, 고명욱, 박정환,
강한곤, 서민우, 정창근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제4조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 긴급구조의 활성화를 위한 표창 규정 등을 신설하여 구민의 생명보호 및 생활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제4조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안 제5조)
- 나. 긴급구조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하여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등을 위한 표창 규정 신설(안 제14조)
- 다. 그 밖에 기관명 변경에 따른 수정 및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정비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 나. 관계법령: 붙임 2
-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 중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표창) 구청장은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응급 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등에게 「대구광역시 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불임 1**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기준) ① · ② (생 략)</p> <p>③ <u>제1항 제4호</u>에 따른 지원금 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④ (생 략)</p> <p>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u>비용 전부</u>를 청구한다.</p> <p>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중소기업진흥공단</u></p>	<p>제4조(지원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제4호</u>-----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 ----- ----- ----- ----- -- <u>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u>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u></p>

<p>3. ~ 8. (생 략)</p> <p>제11조(환수) ① (생 략)</p> <p><u><신 설></u></p>	<p>3. ~ 8. (현행과 같음)</p> <p>제11조(환수) (현행 제1항과 같음)</p> <p><u>제14조(표창) 구청장은 긴급구조</u> <u>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u> <u>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u> <u>여하여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u> <u>등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u> <u>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u> <u>할 수 있다.</u></p>
<p>제14조 (생 략)</p>	<p>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p>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 13. (생략)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 · 실종자 · 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 지방세,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 · 어업 · 임업 · 염생산업(鹽生產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 있는 양도 ·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